

특허청 과제정의서

과제명

「직무발명」의 신규 명칭 아이디어

과제 요약

“직무발명의 의미를 포함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해주세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합니다

보상 금액

아이디어 거래 성사 시 최대 20만원 지급 | 총 7건 거래 예정
20만원(1건) | 10만원(2건) | 5만원(4건)

○ 신규 명칭 필요성

- '직무발명'이라는 명칭은 1974년도 법 제정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명칭의 해석과 발음이 어려워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발명'의 명칭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개명된다면 직무발명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관련 대국민 지원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직무발명이란?

-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의 직무(職務, 鬆)을 “직”, 일 “무”)는 한자이며, 업무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직위들의 집합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과제 배경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 링크: <http://www.kipa.org/ip-job/intro/intro02.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 직무발명의 요건

01 종업원의 발명일 것

종업원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0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0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 직무발명제도의 선순환 구조

-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제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을 제안해 주세요.
- 직무발명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을 제안해주세요.
- 직무발명의 독창성 및 창의성을 포함하는 명칭을 제안해주세요.

(요구사항)

직무발명의 신규 명칭 제안과 함께 명칭의 의미 등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요건**

거래지표	배점	설명
❶ 명칭의 전달력	30	-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제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❷ 명칭의 적용성	30	- 법률안 등 입법과정에서 적용 가능한가?
❸ 명칭의 표현력	20	- 주목성 및 가독성 높은 단어를 활용하여 국민 관심이 유발된 명칭인가?
❹ 명칭의 참신성	20	- 기존에 없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명칭인가?
합계	100	-

**참고
정보**

-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http://www.kipa.org/ip-job/index.jsp>)
- 첨부파일
 - : [카드뉴스] 한 눈에 보는 직무발명제도.jpg
 - : 직무발명제도 브로슈어.pdf